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나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”로, 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”로 한다.

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설립승인의 신청) ①·② (생략)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<u>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</u> 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④(생략)	제2조(설립승인의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 「 <u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</u> -----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</u> ----- ---. ④(현행과 같음)
제41조(규제의 재검토) ①(생략) ② 교육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<u>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1조(규제의 재검토) ①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